

##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 설치및운용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3. 7. 3.  
행정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6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97회 제1차정례회 제5차위원회 (2003. 7. 3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관재

#### 가. 제안이유

구청사가 낡고 협소하며, 여러 동(棟)으로 분산되어 민원불편 및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대민봉사의 질적향상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구청사 신축이 시급하나, 구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, 그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. (안 제2조)
- 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3조)
  - 1)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
  - 2)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  - 3) 교부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
- 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. (안 제4조)

- 1) 구청사 건축비
- 2) 구청사 건립관련 부대경비
- 3)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  -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. (안 제5조)
  - 1)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도록 함.
  - 2) 위원은 구 각 국장 및 보건소장과 마포구의회 의원 1인, 구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함.
  -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,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·결산에 관한 사항, 기타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)
  -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8조)
  -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. (안 제9조)
  -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,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14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동 조례안은 마포구 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신축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을

관리·운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신청사의 규모는 부지 16,529㎡(약 5,000평)위에 연면적 9,000평의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종합청사를 건립하고, 총사업비는 777억 5,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사부지는 지난 2002. 12. 9일 소유권이 이전완료 되었고 부지매입비용은 196억 5,700만원이 되겠으며 동 기금 조성액은 약 581억원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#### <주요내용>

○ 안 제3조에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교부금, 보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, 안 제4조에서는 동 기금은 청사 건축비 및 부대경비와 구청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한 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## <검토의견>

○ 동 조례안은 약 581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신축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신축비용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 재정형편상 완공시점인 2008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전액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조성한다면 구 재정이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서울시 등과 적극 협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, 또한 자연녹지지역과 자동차검사시설로 되어 있는 동 부지상의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은 조속히 변경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, 신청사 건립시에는 노인전문요양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도 함께 건립함으로써 행정타운이 조성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요구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구 예산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?
- 답변요지(이관재 총무과장) : 건축비의 50%를 시에서 보조 받은 사례가 있음.
- 질의요지(오윤수 위원) : 의회청사는?
- 답변요지(이관재 총무과장) : 종합청사 내에 위치함.
-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현부지 사용 계획은?
- 답변요지(조성대 행정관리국장) : 매각, 수익사업, 주민복지 제공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 설치및운용조례(안)에 대한 수정(안)

의안  
번호

제안년월일 : 2003. 7. 5  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구의원 1인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수정골자

-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“구의회”라 한다) 의원 1인”을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“구의회”라 한다) 의원 3인”으로 수정함. (안 제5조제4항제1호)

**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  
설치및운용조례(안)**

**수정(안) 대비표**

원 안	수 정 안
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            ② (생략)            ③ (생략)            ④ (생략)</p> <p>1.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 <u>의원 1인</u>            2. (생략)</p>	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원안과 같음)            ② (원안과 같음)            ③ (원안과 같음)            ④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 <u>의원 3인</u>            2. (원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

의안  
번호

제출년월일 : 2003. 06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구청사가 낡고 협소하며, 여러 동(棟)으로 분산되어 민원불편 및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대민봉사의 질적향상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구청사 신축이 시급하나, 구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, 그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는 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가.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.(안 제2조)

나. 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
- (1)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
- (2)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(3) 교부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

다. 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.(안 제4조)

- (1) 구청사 건축비
- (2) 구청사 건립관련 부대경비
- (3)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라.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.(안 제5조)

- (1)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도록 함.
- (2) 위원은 구 각 국장 및 보건소장과 마포구의회 의원 1인, 구청사

- 건립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함
- 마.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,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·결산에 관한 사항, 기타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.(안 제6조)
- 바.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8조)
- 사.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.(안 제9조)
- 아.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,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14조)

### 3. 근거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(2002.3.25 법률 제6669호) 제133조
- 나. 지방재정법(2001.1.29 법률 제6400호) 제110조
- 다. 지방재정법시행령(2002.12.31 대통령령 제1781호) 제156조

### 4. 조례(안) : 따로 불 임

### 5. 예산조치 : 총사업비 77,757백만원 예상(부지매입비기투자 19,657백만원)

#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3. 4.30~5.20)결과 특기할 사항없음
- 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의결(2003.06.09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, 그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설치)**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(이하 "청사"라 한다)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**제3조(기금의 조성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일반회계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교부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

**제4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.

1. 청사 건축비
2. 청사 건립관련 부대경비
3. 기타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**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구 각 국장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 의원 1인

2. 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**제6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기금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

2. 기금의 조성, 적립,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기타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임기)** ①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고,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 및 장소

2. 출석 위원의 직·성명

3.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

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0조(간사 및 서기)**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서기는 총무담당주사로 한다.

**제11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**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 · 운용한다.

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· 관리하여야 한다.  
③기타 기금의 관리 ·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2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·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회계공무원)**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· 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.

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·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

**제14조(의견청취 등)**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5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&lt;별지 제1호서식&gt;

## 기금 관리 대장

(단위 : 원)

년월일	예 금				인 출			잔 액
	재 원	예금종류	금 액	이 울	기 간	적 요	금액	

&lt;별지 제2호서식&gt;

## 기금 출납부

(단위 : 원)

년월일	적 요	수 입	지 출	결재	담당	과 장
				협조	담당주사	
				결재		
				협조		
				결재		
				협조		
				결재		
				협조		
				결재		
				협조		